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64호 2014. 10. 22.(수)

## 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4-15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허가사항 고시 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364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4 - 150호

###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허가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법률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.

2014. 10. 22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 : 제2014 - 8호(2014. 10. 13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  
가. 성 명 : 윤 상 목  
나. 주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(관양동 메가빌라 107호)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송포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지반조사
  - 면적 : 1,872㎡(직접 : 1,872㎡, 간접 -㎡)  
- 해상빠지, 오탉방지망(144×13=1,872)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38-2 번지선(노룡동 일원) 공유수면
5. 실시계획 허가사항
  - 공사기간 : 2014. 10. 13.~ 2014. 11. 12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허가일자 : 2014. 10. 13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64호(3)

## 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
-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 한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실시계획허가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